

#### [서식 예] 해명광고게재 등 청구의 소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(ㅇㅇ동, ㅇㅇㅇ)

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(ㅇㅇ동, ㅇㅇㅇ)

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해명광고게재 등 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피고는 ○○일보 제1면에 흑백, 5단 37cm 크기로 별지기재의 해명광고를 2회에 걸쳐 게재하라.
-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4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ㅇㅇ아파트(다음부터 위 아파트라고 함)



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, 피고는 위 아파트의 ○○동 동대표입니다.

- 2.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○○. ○○.경부터 원고가 소외 ●●주식회사와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금 ○○○만원을소외 ●●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, 또한 20○○. ○○.에는 지방일간지인 ○○일보에 제보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되도록 하여 가족과친척, 친구, 이웃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등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.
- 3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의 발생경위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로써 금 2,000,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, 또한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별지 기재의 광고를 일간 신문지상에 게재하여야 함이 마땅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유인물

1. 갑 제2호증 신문기사사본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O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#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### [별 지]

### 해명광고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○(○○동, ○○○) ◇◇◇는 ○○○가 ○○시 ○○

구 ○○로 ○○○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
를 선정함에 있어서 ⑥⑥주식회사로부터 금 ○○○만원을 수령하였다는 허위사실
을 위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퍼뜨리고, 그러한 허위사실을 ○○일보에 제보하여 20○○. ○○. ○○의보에 그러한 사실이 게재되
도록 함으로 인하여 ○○○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.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○(○○동, ○○○) ◇◇◇. 끝.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<ul> <li>· 민법 제764조(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)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</li> <li>·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(謝罪廣告)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(過剰)하여 비례(比例)의 원칙(原則)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(人格權)의 침해에 이르게 되므로(헌법재판소 1991. 4. 1. 선고, 89헌마160 결정), 위의 "적당한 처분"에는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아니함.</li> <li>·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서 사죄광고를 구하는 판결이 아니고 ①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・잡지 등에 게재, ②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・잡지 등에 게재, ③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이 있는데,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하여도 사죄광고의 경우처럼 양심결정의 강제나 인격권을 무시하는 등의 헌법위반의 문제는 별로 생길 수가 없음.</li> <li>·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처분을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때 그 청구범위 내에서 명예회복처분을 급전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전자만을 명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할 수 있</li> </ul>		

# ※ (1) 관 할

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



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 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